

학생생활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 학생생활관(기숙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예원예술대학교 학생생활관 (이하 “생활관”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개사기간) 생활관의 개사기간은 학사일정에 의한 수업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이용제한) 생활관 시설물의 이용은 관생에 한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활관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관생활동) 관생의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 및 학문의 연구와 교양함양을 위한 활동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제6조(관생수칙) 생활관장은 관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생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7조(조직) 생활관에 다음의 조직을 둘 수 있다.

1. 생활관장 : 1명
2. 팀장 : 1명 <개정 2022.1.24>
3. 사감 : 약간명
4. 직원 : 약간명
5. 영양사 : 1명
6. 생활지도조교 : 약간명
7. 용원(관리인 및 조리인, 미화인) : 약간명

제8조(생활관장) ① 생활관장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단 겸직이 가능하다.<개정 2022.1.24>

② 생활관장은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관생을 지도하고 생활관을 관리 운영한다.

제9조(사감) 사감은 생활관장의 지시를 받아 관생들의 생활을 지도, 감독한다.<개정 2016.11.17>

제10조(관리실장) ① <개정 2012.12.21.><삭제 2022.1.24>

② 팀장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며 소속직원의 직무를 감독한다.<개정 2022.1.24>

제11조(사감회) ① 생활관에는 생활관장, 팀장, 사감으로 구성하는 사감회의를 둔다.<개정 2022.1.24>

② 사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관생선발 기준 및 선발에 관한 사항
2. 관생징계에 관한 사항
3. 퇴사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부의 할 사항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직원) ① <삭제 2022.1.24>

② 직원은 팀장을 보좌하고, 행정업무와 식당운영 등 생활관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2.1.24>

제13조(생활지도조교) ① <삭제 2022.1.24>

② 생활지도 조교의 대우는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하며 관실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11.17.><개정 2022.01.24>

제14조(용원) ① 관리인은 생활관의 도난과 화재예방 관리, 수리 보수 기타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 미화원은 생활관 내외의 청소업무를 담당한다.

③ 영양사 및 조리인은 생활관내 식당에서 식단작성 조리업무를 수행한다. 단, 외부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업체에서 업무 관리한다.<개정 2016.11.17>

제3장 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 ① 생활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생활관장, 팀장, 사감, 및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된다.<신설 2022.1.24>

제1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개정
2. 세(수)척의 제정 및 개정
3. 예산 및 결산
4. 관생납부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1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팀장이 되며, 팀장 유고시 생활관장이 지명하는 직원 1인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2.12.21.><개정 2022.1.24>

제4장 입사자격 기준 및 퇴사

제21조(입사자격) ① 생활관 입사자격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전염성 질환이 없는 학생으로 선발한다. 다만 외국인인 사감회의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사할 수 있다.<개정 2016.11.17>

② 기타 입사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관생선발) ①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선발기간 중 모집공고에 따라 입사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1.><개정 2022.1.24>

② 생활관장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관생을 선발한다.

1. 성적우수자
2. 장애인·차상위계층인자<개정 2016.11.17>
3. 기타 사감회에서 인정한자
4. <삭제 2016.11.17>

③ 생활관장은 사감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④ 관생들의 다음 학기 입사희망자는 다음 학기 시작 전에 미리 일부 선발한다.<신설 2016.11.17>

제23조(입사허가) ① 생활관 입사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납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는 생활관 입사허가가 취소된다.

제24조(입사기간) ① 입사기간은 본교 학사일정에 의한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생활관 입사 시는 학기 초로하며, 여석이 있을 때는 신청자 중 사감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로 입사를 허가한다.

제25조(입사제한 및 퇴사처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제한 및 퇴사 처분한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
2. 기 퇴사 처분을 받은 자
3. 생활관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4. 생활관 사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퇴사한 자
5. 전염성 질환 감염자
6. 휴학중인 자
7.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
8.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9. 기타 생활관 관생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자

제26조(퇴사신고) ① 관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결정 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용물의 반납 확인을 받은 후 퇴사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기간 내에 퇴사하지 않은 자의 사물은 임의 조치한다.

제5장 재정

제27조(회계) <삭제 2022.1.24>

제28조(재원) ① 생활관의 운영 경비는 학교보조비, 관리운영비, 식비로 충당한다.<개정 2022.1.24>

② 기본재산시설 및 직원의 급료는 학교가 부담한다.

③ 생활관의 공공요금, 일반소모품, 용원의 급여는 관리운영비에서 부담한다.

④ 기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납부금 이외에 특별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납부금) ① 관생이 납부할 관리운영비, 식비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6.11.17>

② 관리운영비, 식비는 매 학기 초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7>

③ 학기 중 입사 시에는 관리운영비, 식비를 잔여일수에 대해 납부한다.<개정 2016.11.17>

제30조(납입금의 용도) 납입금은 다음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삭제 2022.1.24>
2. 관리운영비 : 광열비, 난방비, 공공요금, 소모품, 영양사, 용원급여 등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식비 : 관생식비

제31조(환불) 휴학 및 질병치료, 징계 및 자의 등에 의해 퇴사할 시 당해 학기 잔여일수 관리운영비의 10%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과 식비를 환불한다. 단,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대체입사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해당기간에는 휴학 및 질병치료에 의한 퇴사자를 제외한 그 밖의 퇴사자에게는 환불해 주지 않는다.<개정 2016.11.17>

제32조(예산과 결산) ① 생활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활관장은 매 회계연도 말 15일 이내에 세입 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납부금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연 1회이상 총장이 임명하는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징계

제33조(징계)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생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사처분 할 수 있다.

1. 제25조에 해당하는 자
2. 남학생이 여학생 생활관에 또는 여학생이 남학생 생활관에 허락 없이 출입한 자
3. 절도행위를 한 자
4. 허락 없이 타인의 물품을 사용한 자
5. 공공기물을 파손 한 자
6. 화재 위험물질을 실내에 반입한 자
7. 외출금지 시간을 어긴 자
8. 생활관 규정시간을 까닭 없이 지키지 않은 자
9. <삭제 2016.11.17>
10. 흡연, 음주, 고성방가, 소란 기타 경범죄에 속하는 행위를 한 자
11. 공동생활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자
12. 기타 학생신분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신설 2016.11.17>

제7장 관생회

제34조(관생회) 생활관에는 관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관생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생회를 둔다.

1. <삭제 2022.1.24>
2. <삭제 2022.1.24>

제35조(임무) 관생회는 관생들의 학문탐구에 전력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계획하고 실천할 임무를 갖는다.

1. 면학분위기 조성
2. 사내생활의 질서유지 및 환경미화
3. 생활지도 및 관생친목

제36조(운영)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부 칙(2000.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1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1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